

#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고 영 일  
인사회계법인 이사

최근 유명모금기관의 성금 유용·횡령, 장부조작, 허위회계처리 등 회계부정으로 해당 기관에 사회적인 비난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고 동 기관은 10월 한달간 모금액이 지난 동기에 비해 14억원이나 줄어 들었다고 한다. 또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에게로 불신과 의혹이 확산되어 기부금과 후원금이 급감하고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시설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한 언론사가 수도권 주요사립대학들의 인터넷홈페이지상의 경영공시를 살펴본 결과 법규에서 정한 재무회계보고서를 빠짐없이 정해진 양식대로 보고한 대학을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학들의 결산 자료 전체를 입수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분석해본 결과 불법 고위험 상품 투자와 이로 인한 손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의혹까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한테서 받은 입학 기부금을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법인 전입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교장이 자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기부금 등을 관리하며 유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회계부정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해당 조직과 관련자들의 의식과 자세에 일차적인 원

인이 있지만 공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도 크다. 개별 조직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고 신뢰할 만한 재무보고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표준화된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및 이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감사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회계부정과 오류가 감소하고 비로소 재무보고정보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보고, 회계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해보기로 한다.

영리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각 영역별로 설립근거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기준들은 기업회계기준을 단순히 모방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같은 영역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별로 회계처리방법이 다르거나 회계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03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라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으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각 영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설립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련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먼저 학교법인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제정되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대상은 학교법인·공공단체 이외의 법인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처리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의 방법은 단식부기에 의하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의료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62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제정되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개설자이므로 종합병원은 모두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고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25호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에 의하면 회계의 일반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재무회계개념 체계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원칙 역시 기업회계기준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이 고시와 ‘의료기관회계 기준규칙’에 따라 작성하되 이 고시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회계 기준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영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회계기준 또는 회계방법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단순히 구분만하거나 영리법인의 기업회계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인한 회계오류나 부정을 발생시키고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재무보고와 회계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

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에 의하면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제외)은 결산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의하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은 제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영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재무보고 및 공시와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재무보고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고서 양식이 영리법인의 것을 차용한 것이어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욕구에 맞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표준양식이 없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간을 비교하기는 더욱 어렵다.

모든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회계검토 또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재무보고서(결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형성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특성에 맞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검토·감사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것을 채택한 ‘특정목적감사기준’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이외의 기타 포괄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일부, 특정계정과목, 계정과목의 구성항목,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 요약재무제표 등 특정목적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정목적감사기준’은 강제력이 미약하고 내용이 간략하며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수행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성숙시키고, 공공재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회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Form 990’이라는 비영리법인의 회계보고양식이 표준화되어 있다.

우리도 앞서 언급했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대폭 보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을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이후 각 영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한 영역별 특수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또는 회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계업무 전담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감독당국에서 재무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고 단순하게 공시를 요구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키며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회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발생배경이나 구조,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한 후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상 중심으로 접근하여 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의 개별적인 문제로 귀속시켜 비난을 하거나 단발성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처리된 문제는 악화된 상태로 재발된다. 외과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과적인 원인을 발견하여 근원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의 비영리법인의 회계부정 사태가 인적인 제재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만 끝나지 말고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감사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승화되길 바란다. ☺

